

청주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나522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탈퇴) A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I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현

변 론 종 결 2023. 3. 30.

판 결 선 고 2023. 5. 4.

제1 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가단5488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D생) 사이에 2019. 9.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9. 9. 23. 접수 제979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9. 9.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청주지방법원 등기와 2019. 9. 23. 접수 제979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은 2018. 4. 4. C과 사이에, 2,000만 원을 기간만료일 2023. 4. 4., 이율 연 20.9%, 지연배상금율 연 23.9%로 정하여 대출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이하, 위 약정에 따른 주식회사 E의 C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이자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대출원리금 잔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C은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19. 7. 25.경부터 이자의 납입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그 무렵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는 2019. 12. 14.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아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2584941), 위 법원은 2021. 1. 29. “C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1. 2.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은 부친 G이 1993. 2. 3.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을 상속하였는데, 2019. 9. 23.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여동생인 피고에게 2019. 9. 10.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 당시 C은 이 사건 토지지분 이외에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채무초과상태였다.

마.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2. 11. 10. 원고로부터 2022. 9. 29.자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22. 12. 19.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2023. 3. 30.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승계참가인의 C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C은 2019. 9.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2019. 9.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위 증여 당시 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여동생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C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은 증여가 아닌 대물변제라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또는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그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토지지분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는 C의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대물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는 피고가 2007년 무렵 C과 약정한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그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 원인 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C 사이에 위 대물변제예약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 이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문서도 작성된 것이 없는 점, ② C이 2007. 8.경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1호증)를 작성해주었으나, 위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C이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일 뿐 C이 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을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C은 피고와 C 사이에 2007년경 대물변제예약이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였으나, C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무자이고, 피고와 남매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2007년 무렵 C과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설령 피고가 2007년 무렵 C과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더라도,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며(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참조),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94다2269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대물변제예약 약정시인 2007년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9. 9. 10.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대물변제예약을 기초로 한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는 C의 친동생으로서, 피고 또는 피고의 배우자가 C에게 대여한 금원의 이자조차 지급받지 못하여 수차례 그 이자의 지급을 독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로서도 당연히 C의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이 사건 증여는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송인권, 판사 조수민, 판사 이효선